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나6311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나6311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9가소11071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단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상혁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도명옥

변론 종결2020. 4. 24.

판결 선고2020. 5. 29.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9가소11071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715,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인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 이륜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3. 9. 22:38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67 광진교 남단 교차로에서 원고차량이 유턴하던 중 후행하던 피고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원고차량을 추돌하였고 이에 원고차량이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면서 교차로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F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내용이 그림으로 별지 사고현장약도에 표시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피고가 그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 합계 14,498,15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상호협정'이라 한다)에 의해 구성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한 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의 책임비율(40%)에 따른 부담금액 5,715,250원(피고의 총지급액 14,498,150원 × 0.4)의 구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화해계약이 성립하였고 그 화해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5,715,250원은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반환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정결정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상호협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상호협정은,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체결되고 개정된 것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정한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의 책임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합리적·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나) 이 사건 상호협정은 이에 가입한 협정회사들 사이에서 적용되는데, 협정회사는 보험사업자와 공제사업자들이다. 협정회사들은 운영위원을 1명씩 지명하고, 이러한 운영위원들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이 사건 상호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약(이하 '이 사건 상호협정 시행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한다. 운영위원회가 위촉한 심의위원 등은 심의위원회(소심의위원회, 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정회사들 사이의 구상금 분쟁을 심의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한다(제5조, 제11조). 심의위원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판사 또는 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변호사로서 직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제11조). 당사자는 주장서면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의견청취, 증거조사, 전문적 감정의견의 청취 등 심의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제15조, 제16조, 제21조).

(다)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이 이 사건 상호협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그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하거나 제소 등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조정결정이 그대로 확정된다(제27조). 조정결정이 확정되면 당사자들 사이에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는 조정결정대로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제28조).

(라) 조정결정이 확정된 이후 당사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분쟁에 대해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결정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제30조).

(2) 이와 같은 이 사건 상호협정의 참가자와 적용대상, 조정결정을 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 및 불복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호협정은 적법·유효하므로 협정회사들 사이에서 구속력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상호협정의 내용상,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데,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여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화해계약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참조).

(3)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재심)는 2019. 1. 21.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40%로 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통보서는 조정결정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2019. 1. 31.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이 사건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26조 제4항), 원고는 이때부터 14일이 되는 날인 2019. 2. 14.경 이 사건 조정결정이 정한대로 피고에게 구상금 5,715,250원을 지급하고 2019. 2. 28.경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소를 제기(이 사건 사고와 다른 2018. 5. 17. 07:45경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소라고 할 수 없다)하였으며, 이외에 이 사건 조정결정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구상금을 지급받은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병룡

판사이순형

판사김정민

별지